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0.22)

1. 심사 경과

- 가. 2004. 6. 30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4. 7. 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26호)
- 다. 2004. 7. 29 :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제1차 총무위원회상정 보류
- 라. 2004. 10. 22 :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재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기획담당관 최학림)

가. 제안 이유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제명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로 함(안 제명)
- 2) 장학기금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으로 개정함(안 제2조)
- 3) 기금의 집행범위를 개정함(안 제4조)
 - 당해연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50백만원 범위내에서
- 4)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는 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함(안 제8조제3호)
- 5) 기금의 지급범위를 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상사업비 →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6)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회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7) 추진위원회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13조)

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조례는 우리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 4. 9 제정된 조례임.

■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3. 10. 23 사천시장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바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조례가 승인되지 얼마되지 않았음은 물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현행조례로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며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취지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2004년도에 관내 고등학교입학생 중 성적우수자와 대학교입학 성적우수자등 총72명에게 금128,5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되 당초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장학금 지급범위와 기금지급정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최갑현 위원	<p>■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인구유출방지를 위하여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자녀들이 우리시관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인재육성 쪽으로 방향이 잘못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잘못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p>	기획담당관 최학림	<p>■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음. 따라서 교육관계자, 학부모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안이 장학금은 지급하되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대신 각 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임.</p>
성재윤 위원	<p>■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우수고등학교를 인재육성으로 바꾸면 당초 제정취지와는 완전히 빗나가는 것임.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장학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p>	기획담당관 최학림	<p>■ 본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음. 우수고등학교라는 표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본 조례를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p>
김석관 위원	<p>■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p>	기획담당관 최학림	<p>■ 본 조례를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봄. 본 제도의 효과는 3년뒤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폐지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음.</p>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현철 위원	■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학교나 전교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획담당관 최학림	■ 학교의 선생님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우수고등학교 육성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삼수 위원	■ 우수고등학교육성이 어려우면 구 종축장부지를 활용하여 시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어떤지?	기획담당관 최학림	■ 현재 우리시의 여건상 학생수와 인구수를 볼 때 시립고등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5. 토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우수고등학교육성조례를 인재육성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 장학금 지급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에 지원 할 시는 지원 대상학교가 본 조례의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우수고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고,
- 지원대상학교나 대상사업 선정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각 학교별로 사업비를 나누어주기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토록 의견이 집약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